

연구윤리 관리 규정

개정 2022. 03. 22

개정 2020. 09. 28

개정 2017. 05. 25

개정 2008. 11. 06

제정 2008. 04. 03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(이하 본 학회라 한다)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연구윤리 기준 및 연구윤리위원회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(기능) 본 규정은 학회 회원들이 '지적 소유권'의 가치를 인식하고, 타인의 지적 재산을 도용하지 않으며, 개인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,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하지 않으며, 연구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.

제3조(저자 윤리) ① 본 학회 학회지에 저자로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(JNFCWT) 논문 투고요령'에 나타난 투고 관련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구분 없이 자신의 것처럼 표현한 것은 '타인연구'로 간주한다.

③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'중복 게재(자기표절)'로 간주한다. 다만,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은 학회지 투고논문에 일부 중복인용이 가능하다.

④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지원기관의 관리 규정을 준수한 논문이라야 투고할 수 있다.

⑤ 저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.

제4조(편집위원회 윤리)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논문심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, 심사의뢰 및 게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는다.

③ 편집위원은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
④ 편집위원회는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심사위원 윤리) ①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(JNFCWT)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학회지 논문심사 규정을 준



수하여야 한다.

② 심사위원은 소정의 심사 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만약 연구자와의 관계 등을 보아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.

④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,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전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안내하는 교육성이 있어야 한다.

⑤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적(公的)·사적(私的)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며, 학회지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(私的)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제6조(연구윤리위원회 구성) 본 학회는 연구윤리를 심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 및 편집이사로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,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. 다만, 총무이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윤리위원회 기능)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심의하고 의결한다.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하고 그 의결사항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, 다음 총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.

② 접수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자에 대한 신원 정보는 최종 의결시까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.

제8조(윤리규정 위반 제보)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,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연구윤리위원회에 비밀로 제보할 수 있다.

②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투고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윤리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한다.

③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문제성이 발견될 때에는 상응한 조치를 한다.

제9조(조사 및 심사) ① 본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별도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 유보조치를 취하고, 다음 학술지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한다.

③ 연구윤리 위반사항의 조사 및 심사절차는 첨부 1과 같다.

제10조(소명 기회)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

다. 그 소명의 방식에는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적인 논의도 가능하다.

제11조(심사 결과의 보고) 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심사의 위촉 내용
2. 심사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
3.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
4.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
5. 피조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

제12조(징계의 유형)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며 중복하여 징계할 수 있다. 연구비 수혜의 경우 부당 집행으로 그 지원기관으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.

1.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 위반사항 공지
2. 해당논문 학술지목록 삭제, 게재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
3.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사실 통보
4. 해당 논문 주저자의 향후 5년 간 논문 투고 자격 정지

제13조(기타)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연구윤리 규정 위반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소급 적용될 수 있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첨부 1. 연구윤리조사 절차도

